



수신: 각 언론사 산업부·정치부·환경부 출입기자

날짜: 2023년 5월 4일(목)

문의: 양이원영 의원실 (이정훈 보좌관 010-4066-2554)

총 분량: 7쪽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에 포함!

양이원영 의원,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조치에 헌법기관이 솔선수범하는 모습 필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5월 4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로 명시되어 있는 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특히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법원과 국회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71,052tCO<sub>2</sub>, 20,989tCO<sub>2</sub>로 공공기관 평균의 15배, 4배에 해당되는 것을 양이원영 의원은 지적한 바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도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하다” 며,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조치에 헌법기관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끝/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의원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5. 4.

발 의 자 : 양의원영·강득구·강민정  
권인숙·김의겸·김정호  
민병덕·안호영·우원식  
이탄희·주철현·진성준  
황운하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 25,00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또한 매월 에너지 사용량을 공개하고, 반기마다 자체 점검 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조항의 세부시행 규정을 마련하면서 헌법기관을 제외하였음. 그 결과 현재 온실가스 배출 저감 조치의 법정의무대상에서 행정기관 중 하나인 대통령실과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이 빠져있음.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효율화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법정의무대상에 대통령실과 헌법기관 포함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조치”를 “조치(제1호가목의 자가 추진하는 조치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를 “국가기관”으로, “대통령령”을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국가기관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한 조치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공표의 방법·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 <u>국가</u></p> <p>2.3. (생략) <u>&lt;신설&gt;</u></p> <p>② 제1항에 따라 <u>국가·지방자치단체</u>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p>	<p>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 ----- ----- ----- ----- ----- ----- ----- ----- ----- <u>조치(제1호가목의 자가 추진하는 조치는 제외한다)</u>----- ----- -----</p> <p>1. <u>국가기관</u> 가. <u>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u> 나. <u>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u></p> <p>2.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u></p> <p>② -----<u>국가기관</u>----- ----- -----</p>

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  
-----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한 조치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공표의 방법·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